



법률상담 – 알기 쉽게 풀이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본고는 민원인,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질의하여 회신한 주요 사례 중에서 닭고기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회신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기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자를 표기했으니 본 질의·응답집의 질의회신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관·운반기준의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질의

공정관리 점검일지를 작성할 때, 원료육의 심부온도를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원료육 심부온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매뉴얼 중 원료육 및 부자재 입고 검사 대장(예시)을 보면 원료육의 심부온도 기준이 냉장은 -2도에서 5도 냉동은 -18도 이하라고 적혀있는데요. 심부온도가 -18도 이하가 되려면 냉동차량의 온도가 훨씬 더 낮아야 하는 것 같아서요. 원료육 심부온도의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2012. 04. 30

회신내용)

■ 귀하가 문의한 원료육의 보존온도와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2-118호; 2012.4.2)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 바.에서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C(다만, 가금육은 -2~5°C, 냉동제품은 -18°C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축산물위생관리법 질의·응답집